

인터넷自由貿易地帶 創設과 우리의 課題(I)



김 종 순

〈삼화왕관(주) 전무이사〉

※ 본고는 2회에 걸쳐 게재함

I. 클린턴 美 大統領 메시지

오늘(1997. 7. 1) 나는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미국 정부의 지구촌 전자시장에 대한 비전과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간 협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오백년전 증기기관의 발명과 전기의 이용이 지구촌 사람들을 보다 가깝게하고 보다 번영을 누리게 한 것처럼 오늘날 컴퓨터의 발명과 통신기술의 혁신은 인터넷에 의한 전자혁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생활에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활용은 상거래 분야에 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책과 옷을 사고 사업상담을 하며 정원에 사용하는 각종 장비로부터 고급 통신시설까지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상거래는 매년 2~3배씩 증가하여 몇년내에 상품과 서비스의 매출액이 수천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지속적으로 성장·번영하도록 효과적이며 적절한 환경조성을 이룩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인터넷은 세계 곳곳의 크고 작은 모든 기업들의 열린 창문(open window)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目 次 ■

I. 클린턴 美 大統領 메시지

II. 地球村 電子商去來 基本計劃

1. 背景說明
2. 基本原則
3. 主要爭点
 - (1) 財政上 爭点
 - (2) 法律上 爭点
 - (3) 市場上 爭点
4. 綜合戰略

III. 美國의 사후措置와 우리의 對應方案

모든 국가는 인터넷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촉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각국 정부는 인터넷의 특수성을 소중히 가꿔 경쟁촉진과 소비자 선택 확대가 새로운 디지털 시장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시장경제 원리로 접근해야 하며 전세계적으로 투명·예측가능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성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이 보고서는 전자시장의 출현에 따른 각국 정부가 협의해야 할 주요쟁점들이다. 나는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바이다.(www. whitehouse. gov.)

나는 정부나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세계적 콘센서스를 형성하는데 다함께 참여하여 1999. 12. 31까지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므로서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대(new millennium)에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전자상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풍족한 열매를 고루 향유하기 바란다.

II. 地球村 電子商去來 基本計劃

1. 背景說明(Background)

범세계정보고속도로(GII :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초기 출현 단계이지만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10년내에 교육·의료·레저 등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 심대한 변혁을 몰고 올 것이다. 지금까지 시간과 거리에서 서로 떨어져 살아왔던 모든 인류는 이제 지구촌 구성원으로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만큼 세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미디어는 일찌기 없었다. 지난날 과학자들의

의견교환으로 이용해 왔던 인터넷이 지금은 전세계의 구석 구석을 접속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필수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지구촌 학생들은 웹(World Wide Web)을 통하여 방대한 지식의 보고를 섭렵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사들은 원격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오지의 환자를 진료 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국민들은 정치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터넷은 개인·사회·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금 일대 변혁의 물결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개개인의 목소리를 다양화하고 사회를 더욱 민주화 하므로서 드디어 기존 기업과 경제의 패러다임마저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과 소비자가 전자장터(Electronic Marketplace)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므로서 새로운 상거래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 즉 기업가는 인터넷을 통하여 지구촌 곳곳에 산재하는 고객들과 수시로 상담·거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액투자자라도 손쉽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기술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상사업(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정보서비스(데이터베이스, 온라인신문), 기술정보, 재무서비스, 전문기술서비스(기술상담, 회계, 건축설계, 법률 및 여행상담)를 포함하는 세계교역량은 이미 미국의 연간수출액 4,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거래는 주로 온라인 형태로 이뤄지는데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는 파격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촉진하므로서 기존 상거래 관련분야에 대혁명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소매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는 이제 집에 앉아서 지구촌 곳곳에 있는 제조업자와 소매상으로부터

필요로하는 상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그들이 원하는 물건인가를 맞춰보고 원한다면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값을 지불 할 수 있게 되었다(예를 들면 가상공간에서 구입코자 하는 가구가 그들의 거실 크기에 알맞는가를 맞춰 볼 수도 있다).

21세기초 인터넷 상거래는 수백억, 수천억달러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시장경제 원리의 접근방법을 선택하므로써 전자상거래를 전폭 지원 할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경쟁촉진과 소비자증대가 새로운 디지털시장(new digital marketplace)을 꽃 피우는 결정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많은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은 지금 예측가능한 법적보장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제상거래에 있어 계약체결, 채무이행, 지적재산권보호, 사생활보호, 보안강화 분야에서 그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인터넷이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혹시 규제하지 않을까 무척 고심하고 있다. 규제대상 분야로는 내국세와 관세부과, 정보유통제한, 표준화규제, 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과 등급평가제 등이다. 지금 전자상거래를 통제하려는 각종 조짐이 이미 여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동기는 이와같은 각종 규제조치들이 뿌리내리기 전에 사전 제거코자 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발전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즉 언제 규제법을 만들것인가 또는 만들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가 활기찬 지구촌 장터로 발전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비전을 표시함과 동시에 인터넷 상거래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될 제반원칙과 향후 국가간의 논의·타결해야 될 주요쟁점을 제기한 것이다.

2. 基本原則(Principles)

(1) 民間部門에서 主導해야 한다.(The private sector should lead)

인터넷의 초기발전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졌지만 인터넷이 지금처럼 확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주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려면 민간기업이 계속 주도해야 한다. 첨단기술혁신, 고객센터 서비스 제고, 폭넓은 소비자 참여와 저렴한 가격유도는 민간주도에서 가능한것이 정부규제 분위기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자율규제 방안을 권장하여 인터넷이 지속적으로 번영토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기술표준화 문제도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내국세부과와 같이 정부개입이나 국제협약이 요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민간기업이 정책결정 과정에 공식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政府는 電子商去來上 不當한 制限措置를 取消해야 한다.(Government should avoid undue restriction on electronic commerce)

계약 쌍방은 정부개입의 최소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합법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정

부규제는 공급을 축소시켜 전자상거래를 저해 하므로써 소비자에 대한 가격 상승만을 초래 하기 때문이다. 영업모델(business model)도 기술의 변화에 알맞게 수시로 변해야 된다. 특히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정부규제 방안이 제정될 때 쫓으면 벌써 그 법은 고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교역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 관료주의적인 행정절차와 내국세·관세 등을 부가하지 말아야 한다.

(3) 政府介入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目的은 豫測性, 最小性, 一貫性과 單純性의 法的環境이 保障되어야 한다.(Where governmental involvement is needed, it aim should be support and enforce a predictable, minimalist, consistant and simple legal environment for commerce)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동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상의하달이 아닌 하의상달 방식으로 단순·예측가능한 법체계를 제정해야 한다. 이 원칙은 연방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목적은 자유경쟁보장, 지적소유권과 프라이버시보호, 부당행위방지, 투명성확보, 상거래활성화와 각종 분쟁의 효과적 해결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4) 政府는 인터넷의 特異性을 認定해야 한다.(Government should recognized the unique qualities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공은 지방분권적이며 하의상달방식의 특이성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같은 특징은 기존 법체계와는 다른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정부는 그들의 정책을 이에 알맞게 조정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기존 법체계와 상충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과거 60년간 통신-라디오-텔레비전에 적용되던 법체계가 인터넷에도 적용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법은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하에 일정목적의 실현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기존법규는 새로운 전자시대의 필요성에 알맞게 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5) 인터넷交易은 世界的 基盤위에서 活性化되어야 한다.(Electronic Commerce over the Internet should be facilitated on a global basis)

인터넷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교역을 지원하는 법체계는 매매자의 거주관함에 관계없이 예측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일관된 원칙하에 집행되어야 한다.

3. 主要爭点(Issues)

이 보고서는 인터넷이 정부의 비규제부문으로서 경쟁촉진과 소비자선택 확충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요구되는 국제간에 협의해야 할 9개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들 주요쟁점은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다음 3개 분야로 대별하여 설명코자 한다.

• 財政上 爭点(Financial Issues)

- 關稅와 內國稅(Customs and Taxation)
- 電子技術制度(Electronic payment)

• 法律上 爭点(Legal Issues)

- 電子商去來에 대한 統一規範(Uniform Commercial Code for Electronic Commerce)
- 知的所有權 保護(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私生活保護(Privacy)
- 保安強化(Security)

- 市場上 爭点(Market Acces Issues)
 - 情報通信技術(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 內容物(Content)
 - 技術標準化(Technical Standard)

(1) 財政上 爭点

1) 關稅와 內國稅

과거 50년간 자유무역이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서 각국 정부는 관세율을 계속 인하해 왔다. 이같은 이유와 더불어 인터넷은 범세계적 매체이기 때문에 인터넷 교역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기존상품 교역의 특징인 지리적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은 차후에 지상이나 공항등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관세부과가 가능해 지지만 그 상품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관세 부과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세원을 찾아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각종 국제기구에서 인터넷 교역이 무관세 지역으로 선포되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세계 각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무관세 원칙이 조속히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국은 인터넷에 새로운 내국세가 과세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인터넷에 대한 내국세 부과는 기존 국제 과세원칙과 이중 과세방지 협정등에 일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과세절차가 단순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내국세 과세는 아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상거래를 방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아니된다. 즉 상거래 유형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거래 성격을 변경시키는 유인책을 조성해서도 아니된다.
- 내국세 시스템은 단순·투명해야 한다. 즉 확실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비용과 장부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 내국세 시스템은 미국과 협력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 조세체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내국세 시스템은 인터넷의 특징인 거래자 익명사용, 다품종 소량거래, 과세장소 확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접근방법에 대한 국제간 동의를 얻기위하여 미국 재무성은 OECD 등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국세 과세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방정부와도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논의코자 한다. 내국세 과세의 불명확성과 불일치성은 인터넷 교역의 발전을 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성장과 기존거래와 전자거래간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국제간 과세원칙이 지방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내국세가 전자상거래에 부과되어서는 아니되며 지방정부는 연방정부협조로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간접세가 대중을 이루는 지방정부는 이 원칙이 달리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기존 내국세 과세 원칙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일적이며 단순한 과세방법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電子支拂制度

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불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신용카드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화폐,

스마트카드 등이 지금 개발중에 있다. 민간기업 투자 확대와 경쟁촉진이 지구촌 전자상거래의 혁명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전자 지불제도의 초기 발전단계인 현재, 기술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적기에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유연성이 없는 법 집행은 전자 지불제도를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은 한 건씩 전자지불을 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민간분야의 자율규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중요 법 집행목적 실현을 위한 전자 지불제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하려면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재무성은 전자 지불제도의 전세계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와 현재 협의중이며 관계 국제기구들과도 전자금융, 지불제도의 중요 쟁점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 분석 결과는 어떻게 전자 지불제도가 지구촌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불란서, 리용의 G-7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코뮈니케는 이 새롭고 복잡한 전자 지불제도를 공동 연구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공동 정책과제와 전자상거래의 접근방법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다.

향후 전자 지불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민간기업과 기밀한 협조하에 정책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 대응방안은 새로운 시장요구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法律上 爭点

1) 電子商去來에 대한 統一規範

일반적으로 인터넷 교역자들은 자유롭게 상호 합의한 조건과 기간으로 상거래 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기업 중심의 자유시장 원리는 전통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자유의사가 보장된 법적 환경에서 변창해 왔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인터넷 교역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일규범을 마련키로 하였다. 현재 상거래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거래하는 것처럼 통일된 규범하에서도 자율적으로 인터넷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규칙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이 이와같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그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려면 각국 정부는 가상공간에서 상행위를 보장 할 수 있는 단순하고 예측가능한 상거래 통일규범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각 주정부는 통일상거래규범(UCC : Uniform Commercial Code)를 제정·운영중에 있다. 미국 변호사회를 포함한 민간기구들이 참여한 미국 법률협회 등은 이미 가상공간에서의 통일규범의 채택을 강구중으로 기존 통일규범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전자계약과 디지털장부 등을 연구중이다. 미국정부는 이와같은 통일규범이 세계각국에 채택되기를 지원함과 동시에 미래의 범세계적 규범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국가간 전자상거래 계약을 지원하는 유엔국제무역법(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이 있다. 이 법안은 전자매체를 통한 계약방법, 채무불이행, 전자장부, 전자서명과 법정에서의 전산 기록인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와같은 조항들이 각국의 전자상거래의 통일원칙으로 채택되기 바라며 각종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등에서 연구되고 발전되기를 강조하는 바이다.

전자상거래 기본법에는 아래 원칙들이 포함되야 할 것이다.

- 거래 쌍방은 계약을 체결함에 자유로워야 한다.
- 이 규범은 기술중립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특정기술을 요구하거나 미래 기술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 전자기술 발전에 알맞게 기존규정은 개정하고 새로운 규정은 제정되어야 한다.
- 규범처리 과정에는 첨단기술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규정사항〉

- 정부의 정보통신에 대한 승인과 활성화(계약체결, 전자서류 법적인정)
- 전자 서명에 대한 법적인증
- 상거래 분쟁 발생시 적절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된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명확해야 된다. 관할권의 불명확, 일관성없는 법규 등은 법원 소송사건을 증대시킬 뿐더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가중시킬 뿐이다. 미국은 각국 정부와 기밀한 협력하에 소관 권한을 분명히 하고 쌍방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통일규범을 제정코자 한다.

마지막으로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현행 수작업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신기술개발을 촉진하므로써 모든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와같은 통일규범에 대한 국제간 합의를 2년내 달성코자 한다.

2) 知的所有權 保護

인터넷 교역은 때때로 지적소유권의 사용승인과 판매를 포함하기도 한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려면 판매자는 그의 지적소유권이 절

취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구매자는 법적으로 인증된 상품을 구입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즉 지적소유권의 절취와 사기를 방지 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장치가 요구되며 범죄발생시에는 즉각적인 손해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의 성장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민교육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가. 著作權(Copyrights)

세계적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개의 국제조약과 규범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문학·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다. 이 조약에는 많은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며 각국은 국내법에 따라 문학작품과 음반물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제반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996년 11월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베른협약을 보강하여 2개의 국제조약을 승인·채택하므로써 음반물에 대한 제작자·연출자 보호를 추가하였다. 이 2개의 조약(저작권조약과 연출·음반조약)은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디지털통신의 상업적 활용을 크게 제고 할 것이다.

이 조약은 기술보호와 저작권 관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 디지털 환경하에서 권리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필수사항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 분야에서 국제적, 국내적 표준을 개발코자 하는 민간기업들의 노력을 크게 권장하는 바이며 저작권관리와 기술적 보호장치들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이 조약은 저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작품의 정상적 이용인 경우 예컨대 공정한 사용(fair use)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법으로 제정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미국 정부는 세계 지적소유권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안을 성안하여 현재 상원비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지적소유권 조약은 정보제공업자의 책임사항을 국내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해 당사자간에 상호승인하고 국제저작권 의무조항에 일치되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해결방안을 현재 의회와 공동으로 입안중이다.

세계 지적소유권 조약을 채택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주요 목적의 하나를 달성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적소유권 보호와 그 확산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며 지적소유권 보호 목적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각국 정부는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협약(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에 내포된 의무조항을 지체없이 시행토록 한다.
- 세계 지적소유권 조약의 비준과 시행을 촉진하며 가능한 한 이 조약의 의무조항을 균형적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실현토록 한다.
- 각국 정부는 세계 지적소유권 조약에 참여하여 조약의무 조항을 가능한한 충실히 시행토록 한다.
-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은 관계국내법을 제정·시행토록 한다. 이들 법령은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를 통하여 확산되는 영상물, 컴퓨터소프트웨어, 음반물 등의 저작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미국은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나 관계 국제

기구 등에서 쌍무간,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이와같은 국제적 목적을 추구할 것이며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권유토록 할 것이다.

나. 데이터베이스의 特別保護(Sui Generis Protection of Databases)

1996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회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거론되지 아니하고 별도회의에서 데이터베이스 특별보호를 위한 기초단계를 논의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특별보호를 위한 보다 심도있는 토의와 국내적·국제적 협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미국 정부는 데이터베이스 특별보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도서관, 각종 연구단체와 민간기업 분야에서 관계자료를 수집중이다.

다. 特許權(Patent)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의 성장과 발전은 컴퓨터·통신 분야를 포함한 최신 과학기술 분야에 일대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특허권의 효과적 보호는 인터넷 교역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국 특허청(PTO : Patent and Trademark Office)는

㉠ 민간기업과 합동으로 각종 특허 관련 출판물을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특허 심판관들에게 제공하고

㉡ 전문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특허심판관들을 교육훈련중이며

㉢ 빠른 속도로 변하는 과학기술분야 특허신청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특허 심사규정을 제정코자 한다.

전자상거래의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제 특허권 협약에 있어

- 각 국가는 특허권 소유자의 승인없이 특허 발명품을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며

- 각 국가는 특허내용물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 특허권 분쟁을 해결할 국제 표준 방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적 관점에서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코자 한다. 예컨대 미국, 유럽, 일본의 특허 담당 공무원들은 특허 관련문제를 상호협외·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소집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년도에 범세계 고속도로에 관련된 특허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것이다.

한편 10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산업정보 보호를 위한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에 참석중에 있다. 미국은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에 관련된 특허권 문제를 이곳에서 토의하기 위하여 실무그룹을 설치할 계획이다.

라. 商標權과 도메인명(Trademark and Domain Names)

상표권은 일반적으로 적용범위가 국내에 한정된다.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다른 나라, 다른 당사자간에 소유한 경우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 권리침해를 해결하는데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3자가 상표법에 의하여 기등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명을 등록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도메인명은 인터넷상에서 주소(addresses : source identifier)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 자체 상표와 같이 보호되어야 할 지적소유권은 아니므로 현재 도메인명의 사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국가 법원은 도메인명의 잘못 사용은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적소유권 보호차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표권과 도메인명의 분쟁은 당사

자간 협의에 의하거나 법원 소송으로 해결해왔다. 세계적 기준인 도메인명 사용과 상표권 분쟁은 민간기구가 자율규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터넷 상에서 보다 건전한 사업환경을 조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인터넷 관련 상표권 분쟁을 협의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기구 창설을 이미 준비중이며 도메인명에 관련된 상표권 분쟁해결을 위한 관계자료를 수집중에 있다.

도메인명시스템(DNS : Domain Name System)은 또 다른 주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는 도메인명에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논의·해결하려는 민간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도메인명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무성 산하에 범 정부차원의 실무그룹을 편성하였다. 이 그룹은 각종 도메인명 관련 제안을 검토하고 민간기업, 소비자, 전문가, 의회, 주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각종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그룹은 대국적 관점에서

- 무한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경제 원리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가 도메인명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며
- 인터넷의 하의상달관리체계(bottom-up governance of the Internet)를 최대한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3) 私生活保護

미국 국민은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신장하기 위하여 개인 사생활을 매우 중요시 한다. 각종 정보를 수집, 전송, 활용하는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가 주의깊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개인생활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사람들이 업무를 만족하게 처리하려면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절대 필수적이다.

동시에 미국 민주주의의 최대 상징인 헌법 수정조항 제1조(First Amendment :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보장)는 모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법세계 정보 고속도로상의 상거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만 변영을 기약 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 6월 미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획단(IITF :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국가정보고속도로(Privac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관련 자료의 수집-처리-보관-활용을 위한 사생활보호원칙(Privacy Principles)을 담고 있다.

이들 원칙은 OECD에서 발간한 사생활 보호와 개인자료의 국가간 흐름을 위한 지침서(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pata Flow of Personal Data) 내용과 같은 것으로 당사자에게 자료수집 사실을 알려서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 수집자는 무슨 자료를 수집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수집자는 개인 정보의 제한적 사용과 재사용방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의 공개는 수집사유, 사용용도, 보호절차, 제공 또는 유보, 교정 등의 관련지식을 풍부히 함으로서 정보시장을 활성화하게 된다. 이와같은 자료의 공개는 소비자의 자료의 이용과 참여를 제고시키게 된다.

더불어 정보를 획득하며 공개하고 활용하는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3가지 사항으로

첫째, 정보의 접근과 활용단계에서 개인정보의 비밀이 확실히 유지되어야 한다. → 정보의 비밀성(information privacy)

둘째, 개인정보는 변질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아니된다. → 정보의 안전성(information integrity)

셋째,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완벽하며 합목적적이어야 한다. → 정보의 우량성(information quality)

그런데 만일 정보의 오용과 주부의한 공개로 손해를 입거나 정보의 부정확, 무관련등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1997년 4월 정보기획단(IITF)은 사생활 보호 증진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다. 그 내용은 미국의 정보이용 실태조사와 사생활 보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다. 정보기획단의 목적은 디지털민주사회에 있어 개인 사생활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연방 정부는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사생활 비밀보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 예컨대, 1995년 10월 정보통신행정청(NITIA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는 국가정보고속도로와 사생활 보호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통신과 온라인 서비스상에서 사생활 원칙의 적용과 통지 의무, 승인절차의 기본구조 등이 실려 있다. 1997년 1월 연방통신위원회(FTC)는 법세계 정보 고속도로상의 소비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워크숍(Public Workshop on Consumer Privacy on the GII)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직접 판매와 광고업에 있어 통지, 선택, 보안, 검색을 정보의 공정한 활용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정하였다. 이어서 1997년 6월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4일간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미국정부는 현재 민간기업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소비자 편의의 자율규제 방안추

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방안을 공정한 정보의 이용과 분쟁해결을 위하여 수집자의 통지의무와 당사자 개인의 선택권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 있어 과학기술이 가명 사용기법 등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해결책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생활 보호문제가 민간기업의 자율규제와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은 온라인상에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정부 직접 개입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개인 사생활 문제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로부터의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부모는 그들의 개인정보가 어린이로부터 수집되고 있는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민간업체, 소비자, 어린이 보호단체들이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위험을 해소하고 부모가 정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통신기술, 자율규정과 교육과정이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지않은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시민 사생활 비밀보장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민간업체가 자율규제토록 하거나 정부 행정처분으로 처리하고 있다. 각기 다른 정책의 출현은 국가간 자료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지하게 한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역내 시민의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국가간 개인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각양 각색의 정책이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은 주요 무역 상대국의 협력하에 어떻게 사생활 자료를 취급하는 것이 개인 사생활 비밀도 보호하고 정보를 원하는 고객의 만족을 충족 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토

의코자 한다.

미국은 EU국가와 계속 논의하여 사생활 보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이해토록 할 것이며 그들의 평가기준이 우리의 입장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다. 이와같은 토론에는 상무성과 국무성의 주도하에 백악관, 재무성, 무역대표부와 모든 관련 연방정부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상무성은 민간기업과 함께 EU 규정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을 평가 검토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APEC과 NAFTA 등 각종 국제기구를 통하여 세계 각국과 상무관, 다자간 협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자료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우리는 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민간 부문의 노력이 정부의 규정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민간 분야의 효과적인 사생활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 정책을 재평가 하게 될 것이다.

4) 保安強化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는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그들의 통신과 자료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면 인터넷을 상거래매체로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의 안전요소는

- 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 네트워크상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
- 자료의 무단 사용을 방지 할 수 있는 정보 비밀유지를 위한 효과적 방법
- 그들의 시스템과 자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이해 할 수 있는 잘 훈련된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 이용자 등이다.

범세계 정보 고속도로의 안전과 신뢰를 완

전 보장하는 특별한 마술적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암호사용(encyrption), 법적 인증절차(autheutcation), 비밀번호 관리(password coutral), 방화벽 설치(firewalls) 등의 일련의 기술적 방법과 이들 기술의 효과적이며 일관된 사용을 전제로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가 그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s)을 신뢰 할 수 있는가이다. 디지털 서명과 비밀유지는 암호사용을 필요로 한다. 전자상거래를 신뢰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미국 정부는 법적 인증절차(authentication), 안전성(integrity), 비밀성(confidentiality)을 유지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자율적이며 시장경쟁적인 암호관리 체계를 개발 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암호문은 해독열쇠(decryption key) 없이는 읽을 수 없게 하므로써 자료의 비밀을 확보토록 한다. 그러나 강력한 암호화는 칼의 양날과 같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일반인들은 그들의 상거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암호

체계(strong encrytion)를 사용코자하나 만일 해독 열쇠를 잃어버렸을 경우 영원히 상거래 비밀을 풀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암호 해독 문제는 보다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미국 정부는 암호체계에 대한 신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시장경쟁적 표준화 방안과 공공분야의 암호해독 관리 방법 등을 추진중에 있다. 더불어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분야와는 별개로 상용 암호문의 수출 통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암호해독 열쇠의 관리와 법에 수입된 공무원에게는 암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와 공동 입안중이다.

미국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의 암호관리 체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OECD와 간밀한 협조하에 암호화 정책의 국제적 기준을 개발하여 인터넷 교역에 대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토록 할 것이다.

All good things which exist are the fruits of originality.

현존하는 모든 훌륭한 것들은 독창력의 결실이다.

- John Stuart Mill -